

신구조문 대비표

1. 약관명 : 추가약정서 (가계대출 금리감면용)
2. 시행일 : 2023년 6월 20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현행	개정	비고
<p>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은 하나은행(이하"당행"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p> <p>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한 금리감면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됨에 동의합니다. 매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합니다.</p> <p>감면항목 / 감면금리 / 감면조건</p> <p>□ 급여이체 ____% 급여이체는 매월 당행에 등록된 급여이체일에 당행 본인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이체일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 <p>□ 당행 제휴카드 월()만원이상 결제 : ____% 제휴카드: 하나카드 매월 당행 본인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p>	<p>추가약정서(가계대출 금리감면용)</p> <p>주식회사 하나은행 귀중 본인은 하나은행(이하"당행"이라함)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p> <p>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된 금리감면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 포함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매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됨에 동의합니다.매월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합니다.</p> <p>감면항목 / 감면조건 / 감면금리</p> <p>□ 급여이체 매월 당행에 등록된 급여일자에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당행 본인 원화계좌로 건당 5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입금된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조건 ※ 급여일자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당행에 통보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 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위치 변경)</p>	<p>순서 변경</p> <p>조건구체화 연이율표기</p> <p>위치변경</p>

현행	개정	비고
<p>□ 자동이체 월()건 이상 이체: ____%</p> <p>당행 본인계좌에서의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이체건수는 통장에서 매월 출금된 건수 기준입니다.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펌뱅킹, CMS, 지로, 아파트관리비 등으로 정기적으로 등록된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적금상품 납입 월()만원이상 : ____%</p> <p>매월 당행 본인계좌 적금상품(외화, 펀드, 신탁, 퇴직연금 제외)에 납입하는 조건입니다.</p> <p>□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납입 월()만원이상 : ____%</p> <p>매월 당행 본인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납입하는 조건입니다.</p> <p>□ 1Q bank 서비스 가입 및 이체 : ____%</p> <p>매월 1회이상 당행 본인계좌에서 이체하는(자동이체 제외) 조건으로 본인명의로 개인뱅킹만 인정합니다.</p> <p>□ 기타(): ____% 감면</p> <p>□ 기타(): ____% 감면</p> <p>□ 기타(): ____% 감면</p>	<p>(삭 제)</p> <p>□ 적금상품 납입 월 ()만원 이상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납입 월 ()만원 이상 매월 당행 본인계좌 적금상품(외화, 펀드, 신탁, 퇴직연금 제외)에 월 ()만원 이상 납입하거나 매월 당행 본인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월 ()만원 이상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구속성 행위 여부 판정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적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연 ____%</p> <p>(삭 제)</p> <p>(삭 제)</p>	<p>항목삭제</p> <p>적금/청약항목 단일화 가입제한문구 추가 연이율표기</p> <p>적립식상품 단일화</p> <p>항목삭제</p> <p>기타항목삭제</p> <p>기타항목삭제</p> <p>기타항목삭제</p>

현행	개정	비고
<p>(위치 변경)</p>	<p>□ [기본] 당행 제휴카드 월 ()만원 이상 결제 제휴카드: 하나카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연 ____%</p>	<p>기본문구추가</p>
<p>(신 설)</p>	<p>□ [추가] 당행 제휴카드 월 ()만원 이상 결제 제휴카드: 하나카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결제금액 기준입니다. ※ [기본] 당행 제휴카드 결제 항목과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연 ____%</p>	<p>항목신설</p>
<p>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 받고, 이 내용을 확약합니다.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p>	<p>감면조건 세부사항은 「별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 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이 추가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조건세부사항 별표 신설</p>
<p>채무자 (본인) (인)</p> <p>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p>	<p>채무자 (본인) (인)</p> <p>이 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p>	
<p>(신 설)</p>	<p>「별표」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별 감면조건 세부기준</p> <p>감면항목 / 세부기준</p> <p>급여이체 급여이체는 매월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자금이 본인 명의의 자유로운 원화계좌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입금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리감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급여이체로 판정합니다.</p>	<p>별표 신설</p>

현행	개정	비고
	<p>1. 손님이 직접 '급여일'을 지정(등록) 하고, 해당일자 포함 전후 1영업일 포함 총 3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의 급여성 자금 (카드대금, 보험료, 수수료 등 비급여성 자금은 제외)이 입금될 경우 ※ '2과 3의 방식'은 손님의 소속 단체의 급여이체 처리방식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여일' 등록을 통해 급여 인정 누락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p> <p>2. 자금이체시 '적요'란에 급여로 추정하는 문구^{주)}가 포함되었을 경우 주) 급여로 추정되는 문구는 급여, 임금,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BONUS, PAY, SALARY, 등록직장명 등이 있으며, 급여로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문구가 발생할 경우 추가하고 있습니다.</p> <p>3. 자금이체시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주)}가 급여 유형으로 이체될 경우 주) 은행간 처리구분 코드에는 급여 및 상여코드 이외 4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4대 공적연금은 인정금액기준 (50만원이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p> <p>적립식상품납입 매월 10만원 이상을 당행 본인계좌 적금상품에 납입하거나 매월 5만원 이상을 당행 본인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납입하는 경우 인정되며, 적금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가입 상품의 월 납입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재예치 금액의 경우 제외) 또한 손님이 다수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님이 가입한 각 적금상품의 월 납입합계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자동이체가 아닌 손님 직접 납입액도 인정) 적금상품이 아닌 ISA, IRP, 펀드,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금상품은 원화적금만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신규 가입 상품의 월 납입금이 5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청년 우대형 포함) 일반청약상품(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납입금은 적금상품 납입금에 합산됩니다.</p> <p>제휴카드결제 하나카드로 매월 당행 본인 원화계좌에서 결제하는 조건이며, 통장에서 인출되는 금액 기준입니다. (외화계좌 결제금액은 제외) 매월 3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감면 조건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며, 매월 70만원 이상 인출된 경우 [기본] 및 [추가] 감면 조건이 모두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p>	

현행	개정	비고
	<p>정상적으로 결제일에 결제되는 금액에 대하여, 손님이 결제대금 선결제를 신청하여 본인계좌에서 출금(카드사로 본인이 이체하는 경우 제외)되는 선결제 금액은 선결제(출금)가 이루어진 그 달 실적으로 포함되며, 할부거래의 경우 해당 월에 출금된 할부금 상당액이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됩니다.</p> <p>체크카드 사용금액의 경우, 결제일이 아닌 통장에서 실제 출금이 이루어진 일자가 속한 해당 월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p>	